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
의사 사용자등록 안내문

식품의약품안전처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

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본 안내문은 **2020년 6월부터 가동하는 의사용 "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"** (홈페이지) **사전 사용자등록**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.

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**의사가** 진료 시 **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**으로 수집된 **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요청하여 확인**할 수 있고, 확인 결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※ 법률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및 제30조 제2항 신설

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)에서는 위 **정보서비스를 구축**하였으며, **전국 10만여 명**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선생님이 가동 직전 일시에 접속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어 **사전 사용자등록을 추진**하고 있습니다. 의사선생님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보망에 사용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정보망 사용자등록 방법 ※ 세부안내 <참고1> 참조

○ 「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」(data.nims.or.kr) 홈페이지 접속

○ 상단 '회원' → '회원가입' 메뉴를 선택해 사용자등록

-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- 사용자정보 입력,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공인인증서(본인확인용) 등록
- 의사 면허확인 및 면허증사본(이미지파일 등)* 업로드

※ 5월말까지는 면허증사본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등록 신청 가능 (6월 일괄승인)

○ 회원가입 완료

2 문의처

서비스 운영기관	상담센터 전화번호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	1670-6721

참고1 의사 사용자등록 세부 절차 설명

본 서비스는 환자의 개인정보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제공하는 만큼 철저한 정보보안을 위하여 엄격한 회원가입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❶ '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' 홈페이지(data.nims.or.kr) 접속

- 인터넷 탐색기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 초기화면이 표시됩니다.

❷ 상단 메뉴의 '회원' → '회원가입'을 선택하고 약관 등에 동의

❸ 사용자 정보를 입력

- 가입구분, 휴대폰 본인인증, 아이디, 비밀번호,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번호, 의료기관명, 부서명 또는 진료과명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

❹ 면허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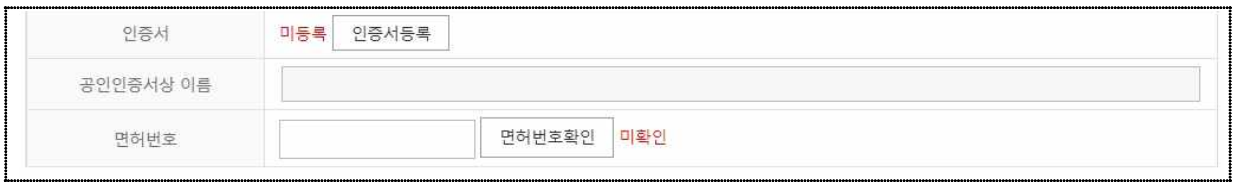

- (인증서 등록) 로그인 또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시 본인확인에 사용할 공인인증서*를 등록

  ※ 금융거래용 또는 범용인증서 모두 가능

- (면허확인) 면허번호와 성명이 면허대장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

  ※ 본인확인 시 입력된 생년월일, 면허번호, 성명과 일치하여야 함

- (면허증 사본 등록) 면허증을 찍은 사진(이미지)파일을 업로드

  ※ 의사 등록 편의를 위하여 **5월말까지는 면허증 사본을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.** 이 경우 6월 서비스 가동 직전 면허번호, 의사명, 생년월일 등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부 확인을 거쳐 일괄 승인처리 예정

❺ 사용자등록 완료

- 가입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등록(회원가입)을 완료

참고2 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 Q & A

질문

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(가칭)이 무엇인가요?

ⓘ 답변

○ 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
○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의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개발한 홈페이지(data.nims.or.kr)의 기능 명칭을 말합니다.

※ 향후 정보서비스 브랜드명을 정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

- 홈페이지 **초기화면에 있는 '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' 버튼**입니다.

질문

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이 왜 필요한가요?

ⓘ 답변

○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지라도 과거 투약(조제) 내역을 알 수 없어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

○ 이와 별도로, 식약처와 보건소에서 전국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일선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(정보서비스)가 꼭 필요합니다.

질문

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은 누가 사용하나요?

ⓘ 답변

○ 법률에서는 '마약류취급의료업자'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, 면허종류로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됩니다.

※ 수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며, 한의사는 마약·향정을 처방·투약할 수 없음

질문

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?

ⓘ 답변

○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11조)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정보를 말합니다.

○ 참고로, 동 정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각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정보서비스가 아닙니다.

질문

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?

ⓘ 답변

○ 의료기관과 약국 보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는 중점관리대상 품목(마약과 프로포폴)은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, 이외 일반관리품목은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참고로, 제도 상 보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

질문

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?

ⓘ 답변

○ 법률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투약내역 확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질문

환자가 투약 또는 조제 받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를 조회할 수 있나요?

ⓘ 답변

○ 2020년에는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(수면마취제), 졸피뎀(수면제), 식욕억제제 등 3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, 기능 안정성 등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전체 마약류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질문

의료기관에서 쓰는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?

ⓘ 답변

○ 2020년에는 식약처에서 개발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(data.nims.or.kr)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, 의사랑, 비트U차트 등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.

○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가이드에 따라 기능을 개발하시면 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질문

내가 조회했던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?

ⓘ 답변

○ 환자 투약내역 조회화면에서 “투약내역 확인이력”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질문

마약류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ⓘ 답변

○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1년의 범위까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참고3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조문

제11조의4(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3.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·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(일자, 약품정보, 수량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요청(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.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시행일 : 2020. 6. 4.] 제11조의4

제30조(마약류 투약 등)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·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제11조의6(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,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용역·연구·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,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2.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8. 3. 13., 2019. 12. 3.>

10.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제6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12. 2., 2018. 3. 13., 2019. 12. 3.>

3.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참고4 **「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」(가칭) 설명**

□ 개요

○ (근거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 ②항 3호 및 제30조 ②항

※ 위 조항은 2019.12.3. 개정되었으며, 6개월 경과 후 2020.6.4.부터 시행

○ (목적) 일선 의료현장의 환자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

○ (내용) 일선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오남용 우려 시 처방·투약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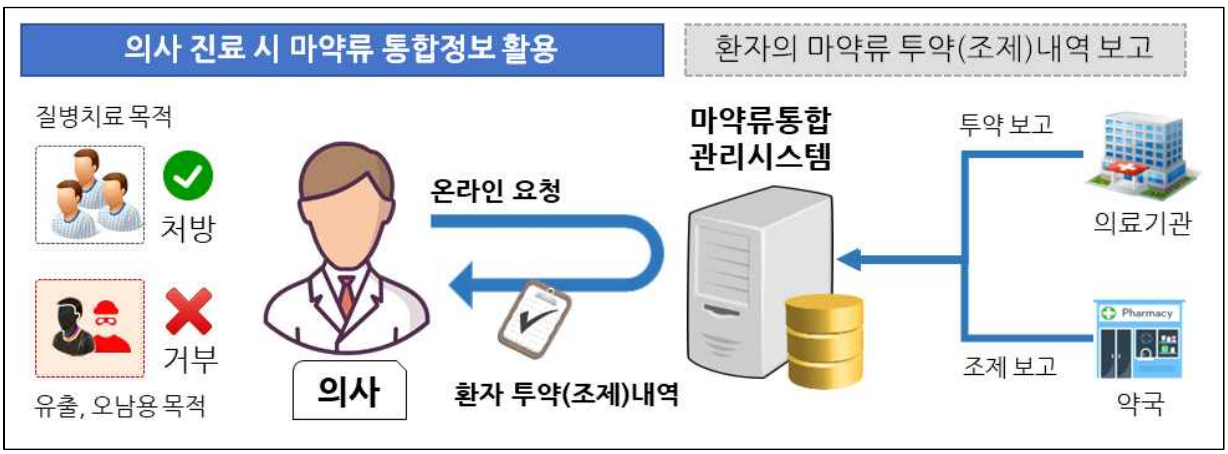

□ 정보망 기능

○ (접속위치) data.nims.or.kr (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)

○ (가동) 2020년 6월 4일(예정), ※ 사용자등록은 2월 3일부터 가능

○ (사용자) 마약류취급의료업자 (의사 및 치과의사)

○ (기능) 의사가 진료 시 인터넷에 접속해 환자정보(성명·주민등록번호)를 입력하여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조회

○ (제공정보) 기간·의사·환자정보 입력 후 일자·약품·수량 정보 확인

구분	정보항목
입력정보	(조회기간) 조회시작일·종료일(최대1년), (의사정보) 의사명, 면허번호 (환자정보) 성명, 식별번호, 핸드폰번호, 고지확인여부(체크)
출력정보	(일자) 투약·조제일자, (의료기관) 종별, 소재 시군구, (약품) 약품명, 효능분류명, 주성분명, 투약수량, 1회 투여량, 1일 투여횟수

○ (운영)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

□ 조회화면 (예시)

투약내역 확인 조건 입력 화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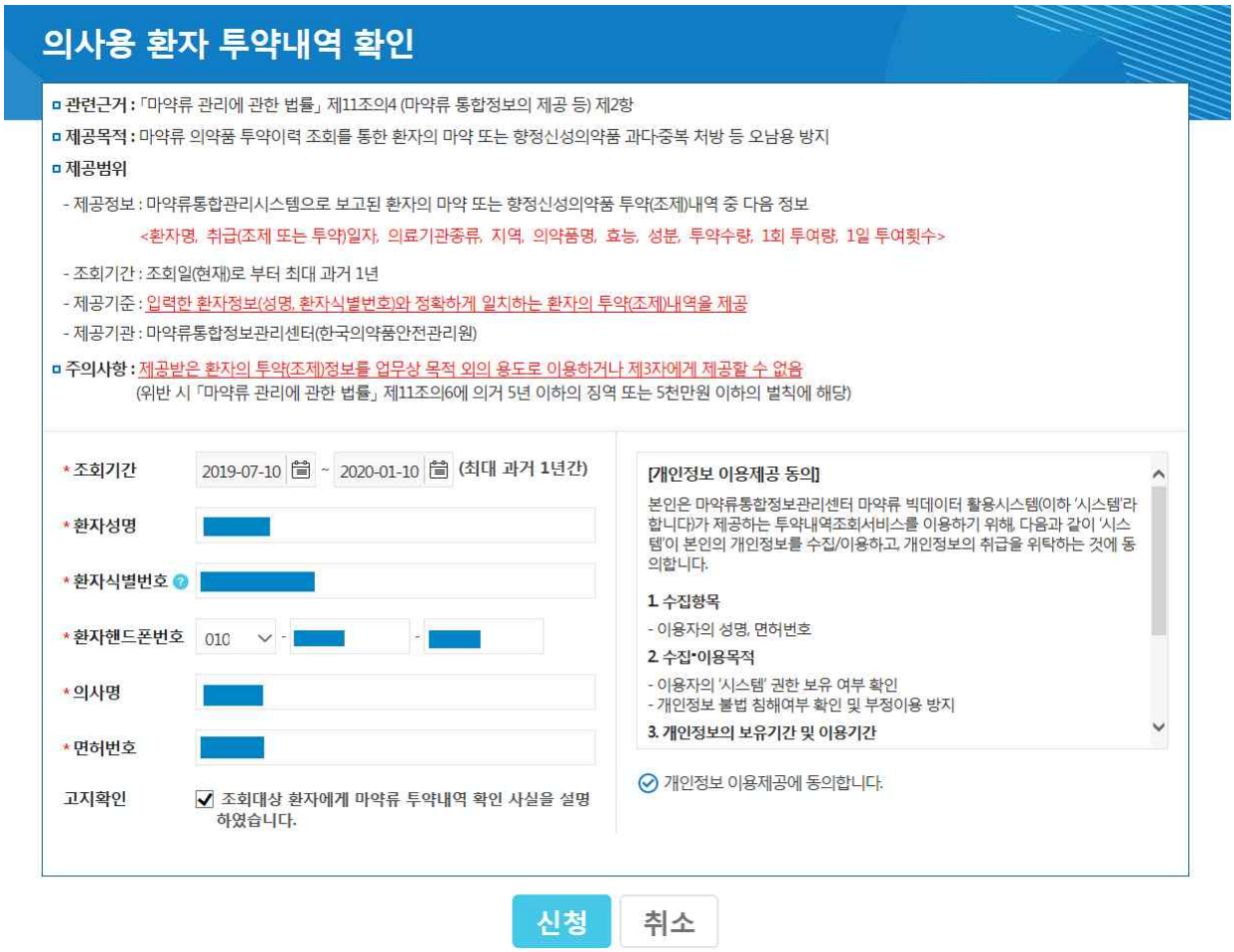

확인결과 화면